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282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 08. 12

www.smarthb-math.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10. 24

이메일

ehb090@hbedu.co.kr

SMART HB MATH

정 보 공 개 서

(주)천재교과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주)천재교과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 18층, 19층, 20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6711-250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852-696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스마트수학사업팀 02-6711-398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천재교과 서	SMART HB MATH 외 2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 18층, 19층, 20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4.01.07.	2004.01.07.	박정과, 임형진	02-6711-2500	02-852-6969
	법인등록번호	110111-2930687	사업자등록번호	119-81-7064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박정과	셀파우등생교실 외 2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 18층, 19층, 20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정과, 임형진	02-3282-2944	02-854-500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임형진	셀파우등생교실 외 2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 18층, 19층, 20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정과, 임형진	02-3282-2944	02-854-500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최정민	셀파우등생교실 외 2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 18층, 19층, 20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정과, 임형진	02-3282-2944	02-854-500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최용준	셀파우등생교실 외 2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 18층, 19층, 20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정과, 임형진	02-3282-2944	02-854-500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장진영	셀파우등생교실 외 2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 18층, 19층, 20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정과, 임형진	02-3282-2944	02-854-500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주)해법에듀	스마트해법수학	2022. 7. 1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9길 54	최돈용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주)해법에듀	스마트해법영어	2022. 7. 1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9길 54	최돈용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주)해법에듀	셀과우등생교실	2022. 7. 1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9길 54	최돈용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SMART HB MATH]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SMART HB MATH	해법브랜드의 수학공부방(교실)임을 나타냄
상 호	SMART HB MATH OO점	
상표(서비스표)		출원 제40-2020-0157296호 (출원일: 2020.09.04.)
		출원 제40-2020-0157297호 (출원일: 2020.09.04.)
	해법 공부방	상품분류 : 제16류 명칭 (한글) : 해법 공부방 등록번호(일자) : 4005317190000호 (2002.10.04)
	해법 공부방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한글) : 해법 공부방 등록번호(일자) : 4100847300000(2003.03.21)
		상품분류 : 제41류(9판) 명칭 (한글) : 해법 공부방 명칭 (영문) : e INTERNET EDUCATION 등록번호(일자) : 4101776920000(2008.11.25)
		상품분류 : 제41류(9판) 명칭 (한글) : 해법 공부방 등록번호(일자) : 410181726000(2009.02.20)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한글) : e-해법수학 등록번호(일자) : 4101980720000호 (2010.06.17)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한글) : e-해법수학 등록번호(일자) : 4101980730000호 (2010.06.17)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한글) : e-해법수학

		등록번호(일자) : 4103263560000(2015.07.07)
		상품분류 : 제16류 명칭 (한글) : e-해법수학 등록번호(일자) : 4010959830000(2015.03.26.)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한글) : e-해법수학 등록번호(일자) : 4103258210000(2015.07.01)
		상품분류 : 제16류 명칭 (한글) : e-해법수학 등록번호(일자) : 4010959840000(2015.03.26)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한글) : e-해법수학 등록번호(일자) : 4103258220000(2015.07.01)
		상품분류 : 제16류 명칭 (한글) : e-해법수학 등록번호(일자) : 4010959850000(2015.03.26)
		상품분류 : 제16류 명칭 (영문) : e-해법창의i 등록번호(일자) : 4009177900000 (2012.05.02.)
		상품분류 : 제16류 명칭 (영문) : e-해법창의i 등록번호(일자) : 4009177910000 (2012.05.02.)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영문) : e-해법창의i 등록번호(일자) : 4102339110000 (2012.06.15.)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영문) : e-해법창의i 등록번호(일자) : 4102339120000 (2012.06.15.)
광 고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영문) : Fummy 등록번호(일자) : 4102020650000호 (2010.10.11)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영문) : Fummy 등록번호(일자) : 4102020660000호 (2010.10.11)
		상품분류 : 제41류 명칭 (영문) : Fummy 등록번호(일자) : 4102020670000호 (2010.10.11)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56,733,884	73,585,905	83,147,979	221,195,993	21,202,519	17,842,205
2022년	216,931,971	123,892,084	93,039,887	175,523,773	10,637,994	12,795,437
2023년	271,358,411	164,673,529	106,684,882	320,559,287	18,963,921	13,644,995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해법에듀는 21년 당시 천재교과서 주식을 100% 소유한 모기업이었습니다. 천재교과서와 22년 7월 1일자로 합병을 했고 해법에듀는 소멸 되었습니다. 회계 상 해법에듀가 합병 전 모기업이었기 때문에 22년 공시자료 작성 시 21년 매출액은 해법에듀로 기재하고 22년 매출액은 해법에듀 1년분, 천재교과서 7/1~12/31일까지 매출액을 합산해서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합병 후 천재교과서 21년 재무제표 공시자료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셀파수학교실’은 2020년 11월 부로 SMART HB MATH에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을 SMART HB MATH에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해법중국어교실’은 2021년 1월부터 가맹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정과	대표	2017.12.~현재	(주)천재교과서 대표	업무총괄
	임형진	대표	2022.11.~현재	(주)천재교과서 대표	업무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최정민	기타비상 무이사	2011. 12.~현재	(주)천재교육 회장	업무총괄
	최용준	기타비상 무이사	2007.01.~현재	(주)천재교과서 이사	업무총괄
	장진영	감사	2022.12.~현재	(주)천재교과서 감사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1	1,572명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천재교과	유사업종의	2007.3 ~현재	SMART HB MATH(등록번호:20080100282)이라는 브랜드의 초,중등 수학전문공부방, 1:1 맞

	서	가맹사업 경영		출형 자기주도학습 코칭 프로그램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7.3 ~ 현재	SMART HB English(등록번호:20080100280) 이라는 브랜드의 초중등 영어 공부방. 자기주도 적 1:1 LAB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코칭 시스템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11.10 ~ 현재	셀파우등생교실(등록번호:20110100450) 이라는 브랜드의 초등전과목 자기주도학습 공부 방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10.7 ~ 2021.4	셀파수학교실(등록번호:20100100369) 이라는 브랜드의 중등 내신 대비 수학 전문 코칭+티칭 결합 프로그램 2020년 11월부터 SMART HB MATH에 통합되어 운 영하였으며 2021년 가맹사업철회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9.1 ~ 2021.1	해법중국어교실(등록번호:20080100721) 이라는 브랜드의 초,중등 중국어전문공부방. 2021년 자진등록취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스마트해법	해당 상표를 가맹점 운영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출원: 2020.9.4. 등록: 2022.3.21.	출원: 40-2020-0157296 등록: 40-1847018-0000	최용준	2032.3.21.
스마트해법수학		출원: 2020.9.4. 등록: 2022.3.21.	출원: 40-2020-0157299 등록: 40-1847019-0000		2032.3.21.
해법공부방		출원: 2008.1.30. 등록: 2009.2.20.	출원: 41-2008-0002652 등록: 41-0181726-0000		2029.2.20.
e-해법수학		출원: 2014.5.7. 등록: 2015.3.26.	출원: 40-2014-0030736 등록: 40-1095983-0000		2025.3.26.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SMART HB MATH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1년 11월 1일

* (주)천재교육에서 (주)천재교과서로 양도前 가맹사업 기간(2001.11.1 ~ 2007.03.11)

2. [SMART HB MATH] 연혁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천재교육	스마트해법수학	최용준	2001.11.1~2007.3.11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9길 54
(주)해법에듀		소대봉	2007.12.31.~2015.12.30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21
(주)해법에듀		임학수	2015.12.31.~2017.2.28.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21
(주)해법에듀		오병목	2017.3.1.~2017.11.30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21
(주)해법에듀		홍인국	2017.12.01.~2021.09.08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9길 54
(주)천재교과서		박정파 임형진	2022.7.1.~2024.7.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 18층, 19층, 20층
(주)천재교과서	SMART HB MATH	박정파 임형진	2024.8.1.~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11층, 18층, 19층, 20층

3. [SMART HB MATH] 업종

영업표지	업종	
SMART HB MATH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교과)	서적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SMART HB MATH]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556	2,556	-	2,553	2,553	-	2,072	2,072	-
서울	417	417	-	417	417	-	347	347	-
부산	165	165	-	175	175	-	137	137	-
대구	108	108	-	107	107	-	82	82	-
인천	112	112	-	125	125	-	102	102	-
광주	65	65	-	58	58	-	32	32	-
대전	40	40	-	40	40	-	30	30	-
울산	22	22	-	20	20	-	13	13	-
세종	28	28	-	23	23	-	21	21	-
경기	945	945	-	959	959	-	786	786	-
강원	64	64	-	60	60	-	45	45	-
충북	58	58	-	53	53	-	44	44	-
충남	72	72	-	70	70	-	58	58	-
전북	56	56	-	60	60	-	55	55	-
전남	71	71	-	62	62	-	49	49	-
경북	129	129	-	131	131	-	112	112	-
경남	183	183	-	172	172	-	145	145	-
제주	21	21	-	21	21	-	14	14	-

5. 바로 전 3년간 [SMART HB MATH] 가맹점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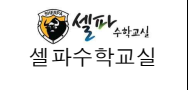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520	460	142	282	0	2,556
2022	2,556	379	264	118	0	2,553
2023	2,553	163	435	209	0	2,072

※ [SMART HB MATH]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SMART HB MATH]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SMART HB MATH]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천재교과서		20080100282	초,중등 수학전문공부방, 1:1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코칭 프로그램	2,556/0	2,553/0	2,072/0
			20080100280	초중등 영어 공부방, 자기주도적 1:1 LAB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코칭 시스템	2,170/0	1,942/0	1,601/0
			20080100721	초,중등 중국어전문공부방	-	-	-
			20100100369	중등 내신 대비 수학 전문 코칭+티칭 결합 프로그램	-	-	-
			20110100450	초등전과목 자기주도 학습 공부방	1,542/0	1,453/0	1,031/0

※ 셀파수학교실은 2020년 11월 1일자로 SMART HB MATH에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가맹사업 철회하였습니다.

※ 해법중국어교실은 2021년 1월부로 가맹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SMART HB MATH]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SMART HB MATH]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2,072	2,537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SMART HB MATH]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38개 지역본부[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주 소	관리 가맹점수	
1	서울 강북구, 도봉구, 경기 의정부,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강북도봉의정부양주지사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 105 (금오동, 프레티ئم프라자2)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김경섭	070-8863-2090	7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2	강원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영동지사	강원 동해시 청운2길 17-10 (쇄운동, 소을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박영우	033-522-0959	1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3	강원 원주시, 평창군, 횡성군, 영월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원주충주지사	강원 원주시 오리현길 57 (반곡동) 반곡빌딩2층 스마트해법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박용석	033-731-1346	5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4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주시,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북북부지사	경북 안동시 북후면 경북대로 952 (오산리)경북북부지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김순옥	054-843-1105	4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5	경기 고양시	고양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92현해상가 3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김현옥	031-914-5105	5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6	경기 광명시, 서울 동작구, 관악구	광명동작관악지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35-6501호 e-해법수학학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이은경	02-897-2090	6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7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광주광역시, 전남 화순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광주시사	광주 남구 효우2로 26 (행암동)25, 303호(제일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양원영	062-383-7890		7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8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금천영등포지사	서울 구로구 새말로 31 (구로동, 롯데구로아파트)상가 3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오미석	02-868-2090		5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9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남 김해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김해양산울산지사	경남 김해시 번화1로44번길 26 4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노경남	055-339-7901		9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10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노원구,종량구, 경기남양주시,가평군	노원종량남양주시사	서울 노원구 공릉동 494-15영진빌딩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최숙현	02-937-7650		12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11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논산시,보령시,계룡시, 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 대전 서구,중구,동구,대덕구,유성구	대전세종지사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54 (반석동, 센타프라자3)6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박연숙	042-826-6711		7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12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대구 수성구,동구,남구,북구 경북경산시,청도군	대구수성구미지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35 (삼덕동3가, 케이에스비)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고진용	053-782-3203		9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13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 동대문구,성북구 경기구리시,양평군	동대문성북구리지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6-3월곡래미안루나밸리상가 3층 307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상돈	02-928-2050		3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14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부산해운대구,기장군,동래구, 금정구,남구,연제구,수영구	부산남부지사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1-4대하프라자 4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나덕선	051-759-2091		8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15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부산 북구, 사상구, 부산진구	부산북부지사	부산 북구 화명동 1130-15금용복합스포츠타운 3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정선	051-364-2093		4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16	부산 사하구, 강서구, 영도구, 동구, 서구, 중구	2022.08.01.~2023.7.31	O	O	X
		부산서부지사	부산 서구 구덕로321번길 15 (서대신동2가)방주빌딩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진희	051-203-1631		3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2022.08.01.~2023.7.31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17	경기 부천시	부천시사	경기 부천시 소향로13번길 28-14 (상동, 매포스타워)71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안향경	032-326-6006		4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2022.08.01.~2023.7.31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18	서울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서초강남송파강동지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79 (송파동, 남경빌딩)2층 203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장원준	02-425-2090		8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2022.08.01.~2023.7.31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19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경기 광주시, 여주시	성남광주하남이천시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7세일프라자 503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태현	031-712-5044		8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2022.08.01.~2023.7.31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20	서울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중구	성동광진마포용산지사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8-11케이원빌딩 3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명희	02-465-2090		4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2022.08.01.~2023.7.31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21	경기 수원시	수원지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하동, 광교 SK VIEW Lake)A동 1607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목심	031-221-9493		14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2022.08.01.~2023.7.31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22	경기 안산시, 시흥시	안산시흥지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6천혜중앙상가 2층 21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최종주	031-407-9615		6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2022.08.01.~2023.7.31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23	경기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시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대륭테크노15차 21층 21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기환	031-389-6017		7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2022.08.01.~2023.7.31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24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기 오산시, 평택시,	오산평택당진지사	경기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충남 당진시		(원정리)상가동 3층 해법수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고혜경	031-657-7838		5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	○	X
25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기 용인시	용인지사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상현동, 광교우미뉴브) C동 51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윤정옥	031-8004-2090		7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	○	X
26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은평서대문강서양천지사	서울 은평구 진흥로1길 11 (역촌동, 미랜드아파트)상가 A3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송현숙	02-356-8202		8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	○	X
27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인천 연수구, 미추홀구, 용진군, 남동구, 중구, 동구	인천남부지사	인천 연수구 새말로 111 (연수동, 영남아파트) 상가 2층 207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장문희	032-721-5705		4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	○	X
28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인천 계양구, 부평구, 서구	인천북부지사	인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20 (연희동, 청라프라자)4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유원용	032-561-0572		6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	○	X
29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전남순천시,여수시,광양시, 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	전남동부지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사곡로 215 (사곡리)사곡보건소 옆 해법영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하태용	(비공개)		3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	○	X
30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전남 목포시,나주시,장흥군, 강진군,해남군, 암군,무안군,함평군, 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남서부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5 (석현동, 석현빌딩)제일빌딩 3층 3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장흥준	061-284-7782		3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	○	X
31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전북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 부안군,군산시,익산시,정읍시, 남원시,김제시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07 (서신동)신안빌딩 6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정희	063-277-2090		5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	○	X
32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37 (노형동)덕진빌딩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조미란	064-746-3007		2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33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남 창원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진주거제통영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 31 (반지동, 반송새마을복지회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지현철	055-237-8274		11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34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천안아산서산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601호(청당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종진	041-576-0905		5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35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청주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6-25 (가경동, 디오스플라자)디오스프라자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현주	043-233-3450		4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36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기 파주시, 김포시, 인천 강화군	파주김포지사	경기 파주시 정담길 41 (아동동, 영창빌딩)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윤정섭	031-957-7749		8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37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북 포항시, 고령군, 성주군, 대구달서구, 중구, 서구, 달성군	포항서대구지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갈산동)대구 비즈니스센터 605-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영향	054-286-2090		9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38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기 화성시, 안성시	화성지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051 (진안동, 메인프라자)307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오상진	031-237-2090		12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2022.08.01.~2023.7.31	O	O	X

* 관리지역에서 누락된 지역은 가맹본부에서 가맹 상담을 받아 지역본부(지사)를 통보해 드립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SMART HB MATH]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518,812	518,812	-	
광고 광고	소계		(비공개)	(비공개)	-	
	매체 광고	연중, 상시	(비공개)	(비공개)	-	학원잡지 등
	기업 광고	연중, 상시	(비공개)	(비공개)	-	온라인광고 등
	기타	연중, 상시	(비공개)	(비공개)	-	설명회, 모델료 등
관측	소계		(비공개)	(비공개)	-	
	지사시책	분기, 연간	(비공개)	(비공개)	-	우수지사 시상
	기타	연중, 상시	(비공개)	(비공개)	-	기타, 관측물 등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가산 IT 금융센터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77	02) 857-9761
우체국	금천우체국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286-9	02) 861-4403

※ 단, 당사가 가맹점 예치를 할 경우, 별도로 서울보증보험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을 체결 2. 가맹점사업자에게 에스크로계좌 발급 통지 <SMS, 이메일, 유선 통지> 3. 가맹점사업자가 에스크로계좌에 최초 가맹금 입금 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입비, 교육비 예치완료 통지 - SMS, 이메일, 유선 통지 - 가맹금 예치증서 발급
필요서류 (은행양식)	가맹금 예치신청서 1부 (가맹금예치신청서는 가맹본부에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함)
정구서류	가맹점사업자 계좌(가맹금 환불용) 사본 1부
비 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본점으로 직접 우편접수 가능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를 시행하고 있기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SMART HB MATH]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은행예치(필수사항)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은행예치(필수사항)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보증금의 경우 가맹사업 시작시의 금액은 확정금액(W500,000원 - 최저 금액)이나 거래 유지 기간 중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채권 규모(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월입금액이 W1,00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시 사업자 등록증 및 인허가(개인과외, 교습소, 학원)를 반드시 취득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는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 및 진행합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350				
가입비	1,000	계약체결일	영업개시전 계약 해지	●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신입교육 훈련비	300	계약체결일	교육개시전 계약 해지	● 교육개시전 : 전액 반환 ● 교육개시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초도물품비	1,050	계약체결일	물품수령이전 계약해지	● 수령 전 : 전액 반환 ● 수령 후 : 반환하지 않음(소모성물품)	예치하지 않음
-------	-------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			
계약이행 보증금	500	계약체결일	- 가맹금, - 물품대금 미지급 등 - 계약 종료 후 조치 (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익월 말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 계약이행 보증금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거래 기간 중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유	내 용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거래 금액이 금일백만원(W1,000,000)을 초과할 경우	● 가맹본부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추가 통보 후 3개월 내 금 오십만원(W500,000) 단위로 추가로 입금한다. ● 초기 입금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추가 입금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합계가 월 평균 거래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 (초기 입금한 계약이행 보증금 + 추가 입금되는 계약이행 보증금 > 월 평균 거래 금액)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800
가입비	1,000
보증금	500
교육비	300

※ 단, 당사가 가맹점 예치를 할 경우 별도로 서울보증보험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3.3㎡, 부가세 포함)

구 분	지	23.1m ²	33m ²	132m ²	지	반	비고
-----	---	--------------------	------------------	-------------------	---	---	----

	급 대상	(개인과외)		(교습소)		(학원)		급 기 한	환 조 건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액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액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총 계	-	1,937 ~ 8,266	277 ~ 1,181	8,730 ~ 11,645	873 ~ 1,165	30,361 ~ 34,470	759 ~ 862	가맹점 개별의 선택 한 개 별 의 합		-
인테리어	자 율 선 택	175 ~ 4,700	25 ~ 671	6,900 ~ 7,825	690 ~ 783	25,075 ~ 26,000	627 ~ 650			- 본사 BI 규정 준수 (교습소, 학원)
간판, 썬팅										
(독서대형) 책상 및 의자	자 율 선 택	612 ~ 816	87 ~ 117	680 ~ 1,020	68 ~ 102	1,836 ~ 2,720	46 ~ 68			- 가맹점 필수
컴퓨터 및 프린터	자 율 선 택	1,000 ~ 2,500	143 ~ 357	1,000 ~ 2,500	100 ~ 250	3,000 ~ 5,000	75 ~ 125			(가맹점 필수) ※최소사양은 본사 공지 확인
(사무용) 테이블	자 율 선 택	150 ~ 250	21 ~ 36	150 ~ 300	15 ~ 30	450 ~ 750	11 ~ 19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 회원별 맞춤학습 및 각종 온라인 툴 사용을 위한 최소사양 이상의 PC가 필요합니다. PC구매 전 본사 및 지사의 전문 인력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맹점의 개설 형태(개인과외, 교습소, 학원)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며, 가맹본부에서는 컴퓨터와 프린터, 독서대형 책상 구비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가격은 책상(60*40*120) 1개당 50,000원 내외, 의자 1개당 17,000~19,000원 내외입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 한 후에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상담용/비치용 교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교재를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할 경우 상담용/비치용 교재를 별도로 주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개인과외	전문대졸 이상	피성년후견인이 아닐것.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이 아니면 강의(수업)를 할수 없음.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음
	교습소	전문대졸 이상		
	학원	강의(수업)를 하지 않는 경우 학력 무관이나, 강의를 하는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종업원	개인과외	종업원 채용 불가	종업원(강사) 채용은 관할 교육청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교습소	종업원 채용 불가		
	학원	종업원 채용가능하며 종업원이 강의(수업)을 하는 경우 (강사)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어야 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부담

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8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가맹지역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광고료	가맹본부	실비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광고 실시 전 전액 반환	전국 광고를 시행한 경우에는 소멸되었으므로 반환 불가
	가맹지역본부	실비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광고 실시 전 전액 반환	지역 광고를 시행한 경우에는 소멸되었으므로 반환 불가
	(비공개)	실비	서비스 개시 후	광고서비스 실시 전 전액 반환	광고서비스를 시행한 경우에는 사용일수 일할 계산
점포환경개선 비용	-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상호 협의에 의한 점포 환경 개선 사항 발생 시, 가맹사업법 제12조2 에 따라, 비용 분담을 시행합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가맹본부에서 진행하는 초기 신입교육비는 가맹금에 포함(1인)되어있으며, 신입교육비 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기간과 내용에 따라 훈련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기간과 내용에 따라 훈련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 한 후에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상담/비치용 교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교재를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할 경우 상담/비치용 교재를 별도로 주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는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가맹원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원을 점검하고 교육상태, 안전 및 위생 상태, 회계자료 열람 등 가맹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이 중단되거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추가 부담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SMART HB MATH]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

[추천재교과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금액	비고
신입교육훈련비	300,000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 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00	
* 초도물품비	1,050,000	
가입비	1,000,000	

※ 초도물품 구매는 양수인이 구매 신청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가맹본부의 가맹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학습기기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시스템 및 교재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존속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맹본부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SMART HB MATH]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SMART HB MATH]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SMART HB MATH]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SMART HB MATH]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교재 및 학습시스템	- 제한내용 :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교재 및 학습시스템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른 가맹점사업자				
비수강생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가맹본부의 독자적 온라인 수업 시스템 및 교재 / DB를 사용하여 학생 개개인별 1:1 맞춤형 코칭 수업을 하는 자기주도형 초중등 수학 전문 공부방	SMART HB MATH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파트단지일 경우 아파트명과 동수, 주택단지의 경우 번지수 등으로 정확히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SMART HB MATH’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SMART HB MATH]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SMART HB MATH]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①+ 15일 이내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가맹점·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1:1 맞춤학습 또는 교육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 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 1항
○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 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 우	33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상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 쇄한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27조 1항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승인 없이 가맹점의 표시(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채무액이 본 계약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한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 및 교육서비스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1:1 맞춤 학습 및 교재를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하여 변경된 1:1 맞춤 학습 및 교재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회원을 미등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본 계약에서 정한 필수품목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 복사 또는 표절하여 사용한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상품 대금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필수품목을 타 업소에 제공·판매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운영일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의 운영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간판 및 썬팅의 설치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수강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개원이 불가능한 경우	34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4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u>	제34조 2항

<u>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u> <u>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u> <u>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u> <u>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u>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u>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u>	제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4조 2항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를 없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개월 전에 가맹본부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존 계약기간에 따른 가맹금은 포기합니다.
 - ② 가맹본부는 양도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본부가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수인은 잔여 계약 기간이 인정되며, 이때 가입비는 면제됩니다.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초도물품비(W1,050,000), 신입교육훈련비(W300,000), 계약이행보증금(W500,000) 및 가입비(W1,000,000)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원할 경우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신규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营业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營業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營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

			며, 소정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리경영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원칙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SMART HB MATH]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 교습소, 공부방, 개인과외 및 이와 동종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가맹본부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① 가맹점사업자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운영일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 5일 이상 개원하여야 하며, 가맹원에 등록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225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휴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휴원하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유가 정당할 시 가맹본부는 승인합니다. 단, 휴원하는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SMART HB MATH 가맹점사업자가 관리하는 수강생들의 월 평균 휴회일이 정당한 사유(어학연수, 병가 등)없이 7일을 넘게 되면 위의 사항을 적용하여 가맹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원 및 휴회원 신청은 관할 가맹지역본부에서 판단하며, 관할 가맹지역본부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가맹지역본부에 통보하고 관할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 담당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종업원(강사) 수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원에 의합니다. 단, [IV-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에 있는 사항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마케팅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가맹원의 운영현황(회원명부, 공부방운영 현황, 교재 배본 및 거래장부, 기타 제반자료)에 관한 결과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원에 출입·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가맹점을 운영·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여하한 형태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즉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과 직원 및 수강생 등의 개인위생관리에 힘써 수강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염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하고 감염된 당사자를 수강생과 가맹점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지 않았거나 서면 동의가 없는 게시물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내·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합니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가맹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⑧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리 경영시킬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해야 하며, 대리 경영인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⑨ 가맹점사업자는 회원자료의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하여 유출된 회원자료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 ⑩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대한 필요한 적절한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5) 정책사항 고지의 의무와 관리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는 SMART HB MATH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사업발전을 위하여

여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고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①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는 정책사항을 이메일, 서면 또는 유무선의 통신수단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으며, 특히 『SMART HB MATH』의 홈페이지에서 정책사항을 고지하

는 공간을 마련하여 고지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매일 1회 이상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가 고지한 정책사항을 확인하고 대처하여야 하며, 정책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SMART HB MATH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전국광고	상품광고	30% 이내		나머지 비용
	상품+가맹점 모집광고	50%		50%
	가맹점모집광고	100%		-
지역광고	상품광고	-	30% 이내	나머지 비용
	상품+가맹점 모집광고	-	50%	50%
	가맹점모집광고	100%		-
가맹점 단독광고		-	-	100%
(비공개)		-	-	100%
판 촉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다만, 경우에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		

※ 전국광고 또는 지역광고의 경우 각 가맹점사업자 간 비용부담의 배분은 가맹점사업자의 총 분담금액을 가맹점사업자의 수로 나눈 비율로 일괄 청구한다.

- 가맹점사업자는 개점과 동시에 『SMART HB English』 링고(비즈링)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
광고 및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관할 가맹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할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여 계약일수에 따라 1일 당 금삼만원(W30,000)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일당 금삼만원(W30,000)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맹점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점 운영을 통해 취득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시스템 및 교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

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계약 성립 시점부터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②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의 존속기간동안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营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③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시스템 및 교재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존속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맹본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6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및 제35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 고
가맹희망자 문의/상담	문의, 희망지역접수, 담당자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7~45	없음
점포개발/상권분석	희망지역결정, 시장조사, 입지지역분석, 확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점포임대비용
가맹점 계약	개설 승인, 가맹 계약서(계약체결 14일 전) 제공, 계약체결, 계약서 1부 보관	D-30	없음
가맹금 예치 / 지급	가입비, 교육비, 초도물품비, 보증금 입금	가맹계약서 작성 후 즉시	가입비 850,000 교육비 350,000 초도물품비 300,000 보증금 500,000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책상 설치	D-29~1 가맹점 오픈 전	실소요
교육실시	가맹점 운영교육 등 실시	초기 신입교육은 계약 후 60일 이내	인테리어 공사기간 병행 진행
행정인허가	영업인허가 등	즉시	없음
개원	개원 준비 및 영업개시	D-0 계약후 (45)일 이내	실소요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 분담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해당 지역의 지사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회원 모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 합니다.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강제 하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유상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은 무상으로 해당지역의 지사에서 진행 합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수강생 모집 촉진	수강생 모집, 학부모 만족도 증대를 위한 온라인 학부모설명회 시행	조건 없음	수시	내부강사 및 외부강사	
가맹점 운영 물품 구비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쇼핑몰(폐쇄몰) 운영	조건 없음	가맹계약기간	각종 홍보시안 및 판촉물품 운영물품 구매 가능	
우수가맹점 포상 제도 운영	수시 프로모션 및 수강생 증대 우수 가맹점에 대한 포상	수강생수 기준	월간, 연간, 수시	상패, 선물, 쇼핑몰 포인트 등 지급	
온라인 홍보 지원	가맹점사업자의 온라인 홍보 교육 및 이벤트 시행	조건 없음	수시	온라인 홍보 교육, 블로그 포스팅 따라하기 등	

학습 경진 대회 지원	수강생 학습 성취도 경진 대회 시행 (예: 수학개념 말하기대회 등)	신청자에 한함	수시	대외 홍보, 입상자 포상, 대회 커리큘럼 제공	
도전 커뮤니티 운영	가맹점 간 교류를 도모하여 우수사례 공유, 성공동기 부여 등을 통한 가맹점 운영 협조	신청자에 한함	수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제공, 우수 노하우 공유	
정기 교육 및 회의	지역본부(지사)의 정기, 수시 교육 및 회의	조건 없음	수시, 상시	경영컨설팅, 운영교육 등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SMART HB MATH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입교육	온라인 교재 및 오프라인 교재 활용 전반 수업운영전반, 운영규정교육, CS, 마케팅	집단강의 (집체교육) 및 온라인 강의	1박2일, 과정 이수	필수
OJT교육	온라인 교재 및 오프라인 교재 활용 전반 전산, 홍보·상담, 참관수업, 법률, 세무	온·오프 강의 및 실습	3일	필수
향상교육	회원모집 및 홍보 계획, 신규 회원 상담 및 가맹점 운영 안, 표준수업점검 및 회원관리 안, 성공사례 및 마인드 스킬 업 교육	온·오프 강의	1일	필수
전문가교육	회원수 별 가맹점 운영노하우, 개정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점검 과정, 사례발표	온·오프 강의	1일	필수
이슈 교육	개정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점검 과정	온·오프 강의	1일	필수
수시 교육	운영전반, 시스템 활용교육, 마케팅교육	온·오프 강의	1일	필수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SMART HB MATH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입교육	14시간	250	최초 계약시 이수 1인 內 (추가 시 1인당 ₩250)
OJT교육	5시간	실비	오픈 후 1개월 이내
향상교육	5시간	실비	오픈 후 6개월 이내
전문가교육	4시간	실비	1년 2회 진행
이슈 교육	별도	실비	가맹지역본부에서 필요 시 운영
수시 교육	별도	실비	가맹사업 유지 필요에 따라 진행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위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첨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